



개인연금의 이해(6): 변액연금과 자산연계형연금

오병국 연구원

- 개인이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연금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, 변액연금, 자산연계형연금¹⁾으로 구분됨.
- 일반 연금은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연금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함.
 - 일반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금리확정형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됨.
 - 금리확정형의 경우 적용금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없으나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음.
 - 금리연동형의 경우 적용금리의 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.
 - 다만, 금리연동형일지라도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연금과 같은 투자형 연금상품에 비해 연금액의 변동성이 크지 않음.
- 투자형 연금의 경우 비록 일반연금에 비하여 연금수령의 안정성이 낮을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(hedge)를 통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된다는 이점이 있음.
- 투자형 연금 중 변액연금은 보험료 중 일부²⁾를 주식,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상품임.
 - 주식, 채권 등에 대한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, 반대의 경우 일반 연금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.

1) 변액연금과 자산연계형연금은 각각 2002년, 2005년에 도입되어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되고 있음.

2) 총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임.

- 변액연금은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 개시 후의 공시이율³⁾을 적용하며,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하여 투자실적에 상관없이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 재원을 보증(예: 원금 대비 100~200%)함.
 - 참고로 변액연금의 보증옵션은 최저사망금 혹은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 여부에 따라 각각 GMDB⁴⁾와 GMAB⁵⁾로 구분됨.
- 연금 상품 구입자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형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, 펀드 변경이 가능함.
- 아울러 다양한 부가특약을 자유 조립할 수 있으며, 10년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.

■ 자산연계형연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, 채권금리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 한 후 발생된 수익을 연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금 상품임.

- 현재 연계자산의 유형에 따라 채권금리연계형, 주가지수연계형, 금리스왑연계형이 판매 중임.
- 연계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, 변액연금보다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.
 - 자산연계형연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(보통 원금의 1~1.5%)을 설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원금의 100% 최저보증을 제시하는 변액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보증 받을 수 있음.
- 보험회사는 3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평가익을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계약자가 평가익 정산 이전에 계약해지할 경우 평가익을 지급하지 않음.

3) 보험회사에서 매월 변동되는 고시금리임.

4) GMDB(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)은 최저사망금보증으로 연금개시 전 사망보험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기납입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임.

5) GMAB(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)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으로 연금개시 시점에서 펀드의 계약자적립금과 기납입보험료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보증하는 것임.